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온라인 종합상황실 기획·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데이터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모바일 신분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특례시 등 지원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청년마을 조성사업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섬 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공공기관 혁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소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 사각지대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역 균형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분권실의 명칭을 지방자치균형발전실로 변경하며, 종전의 지방자치분권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폐지하되 관련 정원 중 2명(4급 1명, 7급 1명)은 안전정책실, 6명(5급 4명, 6급 2명)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지방자치균형발전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재난안전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하여 안전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정원 29명 중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감축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정보시스템 관리 인력 1명(7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력 14명(5급 9명, 6급 4명, 7급 1명)

및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인력 1명(6급 1명), 국가기록원의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력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이북5도의 인력 1명(9급 1명), 대통령기록관의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실”을 “지방자치균형발전실”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한다.

5의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5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15의2.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제14조의 제목 “(지방자치분권실)”을 “(지방자치균형발전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실”을 “지방자치균형발전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9호부터 제8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3.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14.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5.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7.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19.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0.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정책의 기획·총괄

22.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3.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24.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5.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협조

27.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기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협조
28.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2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3.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34.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35.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36.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7.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8.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3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40.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운영 및 제도 개선
4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및 개선
44.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제도 개선
45. 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4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47.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8.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49.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1.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52.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53.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54.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55.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57.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관리
5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9.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6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61.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 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62.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 · 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63.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획 및 관련 법령의 관리
64.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5.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6. 과학기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6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68.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9.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1.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 지원
72.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 관리
73. 인감제도의 연구 · 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 · 운영
7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 · 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 · 운영

75.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76.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77.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8.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9.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 ·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 · 지원사업의 추진
 80.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81.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8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83.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 정비
 84. 자전거의 날 운영 ·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9호부터 제5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 · 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10.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7.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18.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19.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2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22.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2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24.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5.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6.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27.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28.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9.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3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1.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33.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4.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35.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6.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3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38.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
3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4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1.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42.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43.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44.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5.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6.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47.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48.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제3항제10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7호부터 제6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11.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4.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15.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1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22.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23.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4.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25.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26.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2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28.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29.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총괄
30.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3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32.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3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한다)
34.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

35.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6.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7.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8.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9.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보급은 제외한다)

40.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41.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42.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43.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44.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46.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

47.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48.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49.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

50.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51.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2.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3.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4.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5.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57.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58.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59.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60.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1.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62.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63.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64.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제23조의2제3항제31호 및 제32호 중 “국가기반시설”을 각각 “국가핵심

기반”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114명”을 “1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림청, 1명(5급 1명)은 질병관리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구축”을 “구축 및 운영”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636”을 “1,645”로 하고, 일반직 계 “1,594”를 “1,6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25”를 “1,53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321”을 “1,309”로 하고, 일반직 계 “1,310”을 “1,2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66”을 “1,254”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1) 재난관리실 1개 과	5명
2) 지방자치균형발전실 1개 과	0명
3) 안전정책실 1개 과	6명
4) 재난협력실 1개 과	4명
5) 지방자치균형발전실 1개 과	2명
6) 안전정책실 1개 과	4명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9명, 6급 4명, 7급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4조의2제4항 관련)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22
일반직 계	22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21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u>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u> <u>디지털정부국·경찰국·지방자</u> <u>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u>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②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 ----- <u>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u> <u>디지털정부국·경찰국·지방자</u> <u>치균형발전실·지방재정경제실</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부혁신조직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6. ~ 15. (생략) <u><신설></u> 1. ~ 25. (생략) <u>26. ~ 30. (생략)</u> <u>31. ~ 35. (생략)</u>	제12조(정부혁신조직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u> <u>업무 총괄·지원</u> <u>5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u> <u>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u> <u>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u> 6. ~ 15. (현행과 같음) <u>15의2.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u> <u>선 및 운영·지원</u> 1. ~ 25. (현행과 같음) <u>31. ~ 35. (현행 제26호부터 제</u> <u>30호까지와 같음)</u> <u>26. ~ 30. (현행 제31호부터 제</u> <u>35호까지와 같음)</u>

36. ~ 58. (생략)	36. ~ 58.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자치분권실) ① 지방자치분권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제14조(지방자치균형발전실) ① 지방자치균형발전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0.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1.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2.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3.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13.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
15.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5.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6.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9.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8.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21.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19.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0.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2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2.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3.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2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	24.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정 및 대응	25.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 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의 운영·발전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 선
27.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6.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 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36.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분할·통합·명칭변경, 관 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34.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 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 사 통계의 작성·유지
28.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7.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 별 시행계획 기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협조	3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 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 분에 관한 연구·지원	35.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 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2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 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28.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 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의 운영·발전	37의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 영에 관한 사항	36.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 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 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 선에 관한 사항
30.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 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분할·통합·명칭변경, 관 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38.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 구·개선 및 운영 지원	37.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1.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 ·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 M)의 개발·관리	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 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 분에 관한 연구·지원	39.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 (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 선	38.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 의 연구·개선
32.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3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에 관한 사항	40.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 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 사 통계의 작성·유지	3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33.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 구·개선 및 운영 지원	41.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 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40.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33의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33.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 (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 선	4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	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 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34.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 별 시행계획 기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협조			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운영 및 제도 개선
			4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금 관리 및 개선	53.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44.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제도 개선	54.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5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4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45. 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55.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57.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4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4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향 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55의2.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5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47.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59.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7. 지역사회혁신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의 관리	48.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57.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6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48.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9.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7의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1.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9. 지역 활성화 지원 기금·재단의 설치 및 지원시스템의 개발·운영	50.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7의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2.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50. 지역사회혁신의 홍보에 관한 사항	51.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5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63.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획 및 관련 법령의 관리
51.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52.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59. 지역사회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및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64.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53.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60.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5.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4.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61. 지역사회혁신 관련 민간 역	66. 과학기술·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55.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u>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및 대학·교육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u> 62. <u>지역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확산 방안 마련 및 추진</u> 63. <u>지역사회혁신 관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 등 지원</u> 64. <u>지역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 구축</u> 65. <u>지역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구축</u> 66. <u>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 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u> 67. <u>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u> 68. <u>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u> 68의2. <u>삭제 <2022. 9. 14.></u> 69.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u> 70. 「<u>국가균형발전 특별법</u>」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 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67. <u>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u> 68. <u>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u> 69. <u>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 70. <u>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u> 71. <u>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u> 72. <u>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u> 73. <u>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u> 74. <u>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u> 75. <u>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u> 76. <u>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u> 77. <u>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u> 78. <u>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79. <u>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u>	<u>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u> 71. <u>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u> 72. <u>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u> 73. <u>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 개선사업의 추진</u> 74. <u>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u> 75. <u>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76. <u>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 대책의 추진</u> 77. <u>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u> 78. <u>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u> 79. <u>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u>	<u>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사업의 추진</u> 80. <u>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 대책의 추진</u> 81. <u>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u> 82. <u>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u> 83. <u>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u> 84. <u>자전거의 날 운영·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u>
--	--	---	--

80. <u>자전거의 날 운영·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u>
81. <u>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u>
82. <u>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u>
83. <u>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u>
84. <u>기초구역, 지점번호, 상세주소 및 명예도로명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u>
제22조(안전정책실) ①·② (생략)
③ <u>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3. (생략)
4. <u>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u>
5. <u>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u>
6. <u>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u>
7. <u>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u>

제22조(안전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5. <u>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u>
6. <u>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u>
7. <u>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u>

<u>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
8. <u>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
9. <u>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u>
10. <u>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u>
11. <u>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u>
12. <u>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u>
13. <u>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u>
14. <u>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u>

<u>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u>
8. <u>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u>
9. <u>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u>
10. <u>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u>
11. <u>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2. <u>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3. <u>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u>
14. <u>재난안전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15. <u>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5.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 육에 관한 사항	27.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 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27. 삭 제	28.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 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7.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 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18.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 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 개선	28. 삭 제	29.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18.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19.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 조사 점검 및 평가	29. 삭 제	29.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19.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 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 개선	2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 · 지원	30.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 조사 점검 및 평가	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기획·제도개선	31. 삭 제	31.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2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 · 지원	22.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 성사업 추진	32.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 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3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 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 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기획·제도개선	2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 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3.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 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3.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 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 성사업 추진	24.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 ·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 한 사항	34.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34.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2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 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25.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 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 육에 관한 사항	3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5.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 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 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5.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 ·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 한 사항	26.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36.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6.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 난예방 기법 연구
26.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		37.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 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 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3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 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38.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 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9.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40.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8.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	49.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48.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1.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3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50.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삭 제>
4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4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1.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4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	41.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5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42.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53.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삭 제>
4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43.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5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6.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4.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5.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7.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5.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6.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삭 제>
4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6.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57.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이행제도의 운영	<삭 제>
	47.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3조(재난관리실) ①·② (생략)	제23조(재난관리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u>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u> 11. <u>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u> 12. <u>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u> 13. <u>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u>에 관한 사항 14. <u>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u>에 관한 사항 15. <u>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u>에 관한 사항 16. <u>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u>에 관한 사항 17. <u>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제공</u>에 관한 사항 18. <u>재난관리</u>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19. <u>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u> 20. <u>삭제</u>	③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u> 11. <u>재해위험 개선사업</u>에 관한 사항 12. <u>소하천의 정비</u>에 관한 사항 13. <u>급경사지 재해예방</u>에 관한 사항 14. <u>저수지·댐 안전관리</u> 관련 제도의 운영 15. <u>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u>에 관한 사항 16. <u>방재시설의 유지·관리</u> 평가에 관한 사항 17. <u>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u>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u>지역안전도 진단</u> 제도의 운영 19. <u>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u>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u>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u>에 관한 사항 21. <u>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u>	21. <u>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u> 22. <u>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총괄</u> 23. <u>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u>에 관한 사항 24. <u>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u>에 관한 사항 25. <u>재난분야 매뉴얼</u>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26. <u>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한다) 27. <u>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 28. <u>재난사태의 선포·해제</u>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	<u>책의 수립·운영</u> 22. <u>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u> 23. <u>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u> 24. <u>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u> 25. <u>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u> 26. <u>재난관리</u>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27. <u>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u> 28. <u>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u> 29. <u>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총괄</u> 30. <u>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u>에 관한 사항 31. <u>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u>에 관한 사항 32. <u>재난분야 매뉴얼</u>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	--	---	--

은 제외한다)	3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9.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한다)
30.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4.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
3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5.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2.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보급은 제외한다)	36.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3. 삭제	37.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4.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35.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6.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38.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7.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39.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보급은 제외한다)
38.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39.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41.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40.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	42.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41.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43.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42.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44.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	45.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44.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46.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
45.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7.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
46.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7.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동 지원	
47의2.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8.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55.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47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 성에 관한 사항	49.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 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 영	56.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 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47의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 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 항	50.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57.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4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51.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 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58.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 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 험료의 지원
49.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 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 험료의 지원	52.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 한 사항	<신 설>	59.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 축 총괄·조정
50.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 축 총괄·조정	53.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60.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1. 삭 제	54.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61.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 ·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52.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5.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에 관한 사항	<신 설>	62.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 동 지원
53.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 ·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 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 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신 설>	63.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54.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		<신 설>	64.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 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제23조의2(재난협력실) ①·② (생 략)	제23조의2(재난협력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30. (생략)	1. ~ 30. (현행과 같음)	림축산식품부, 5명(5급 5명)은	-----
31. <u>국가기반시설</u> 지정 및 취소	31. <u>국가핵심기반</u> -----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	-----
에 관한 사항	-----	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
32. <u>국가기반시설</u> 보호 및 관리	32. <u>국가핵심기반</u> -----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	-----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	-----
33. ~ 39. (생략)	33. ~ 39. (현행과 같음)	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	-----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5급 1명)은 국세청, 17명(치안	-----
의 정원) ① (생략)	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감 1명, 총경 2명, 경정 8명, 경	-----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② -----	감 2명, 경위 4명)은 경찰청, 8	-----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	-----	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	-----
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	방위 2명)은 소방청, 1명(5급 1	-----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	명)은 <u>산림청</u> , 1명(5급 1명)은	----- <u>산림청</u> -----
정원을 포함한다)은 <u>114명</u> 을 상	----- <u>115명</u> -----	<u>질병관리청</u> , 4명(5급 4명)은 기	-----
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	-----	상청, 6명(경정 4명, 경감 1명,	-----
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	-----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	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	-----
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	-----	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
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	-----	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
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	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
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	해야 한다.	-----
한다.	-----	제64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	제64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③ -----	보화추진단) ① 행정안전부 지	보화추진단) ① -----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	-----	방재정경제실에 「행정기관의	-----
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	-----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
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	-----	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2</u>	----- <u>2024</u> -----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차세대지방재정세 입정보화추진단을 둔다. ② (생 략)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생 략) 2.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 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u>구축</u> 3. (생 략) ④ ~ ⑥ (생 략) 제65조(한시정원) ① 국가에서 지 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12</u> <u>월 31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 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②·③ (생 략)	년 6월 30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u>구축 및 운영</u>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한시정원) ① ----- ----- ----- ----- ----- <u>2026년 12</u> <u>월 31일</u>-----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36</u>	<u>1,645</u>	+9
·	·	·	
·	·	·	
일반직 계	<u>1,594</u>	<u>1,603</u>	+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u>1,525</u>	<u>1,534</u>	+9
·	·	·	
·	·	·	

[별표 3]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21</u>	<u>1,309</u>	-12
·	·	·	
·	·	·	
일반직 계	<u>1,310</u>	<u>1,298</u>	-1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66</u>	<u>1,254</u>	-1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6